

법률이 보장하는 평등한 기회

연방 재정지원 수혜자는 인종, 피부색, 종교, 성별(임신, 출산, 관련 의학적 상태, 성별 관련 고정관념, 트랜스젠더 여부 및 젠더 정체성 포함), 출신 국가(영어 구사능력 포함), 연령, 장애, 정치적 성향, 신념, 혹은, 시민권 소지 여부 또는 노동력 혁신 및 기회법(Workforce Innovation and Opportunity Act, WIOA) 제1부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에 의거하는 WIOA 제1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, 신청 또는 참가 여부를 근거로 차별해서는 안 되며, 이는 법에 위배됩니다.

연방 재정지원 수혜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수준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. 이는 요청을 받을 경우 장애인에게 유자격 전문가의 보조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.

차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 취해야 할 조치

귀하가 WIOA 제1부 재정 지원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따라 차별을 받았다고 여겨지는 경우, 차별을 인지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수혜자의 기회균등 담당관 또는 수혜자가 지정한 자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민원은 고용개발부(EDD) 또는 노동부의 민권센터(CRC)에 우편으로 송부하시기 바랍니다.

**Equal Opportunity Officer
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(EDD)
PO Box 826880, MIC 83
Sacramento, CA 94280**

또는

**Director, Civil Rights Center (CRC), Department of Labor
200 Constitution Avenue NW, Room N-4123
Washington, DC 20210**

민원은 이메일로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. EDD는 **EEOmail** (EEOmail@edd.ca.gov)로, 노동부는 **Civil Rights Center** (dol.gov/crc)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수혜자에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, 수혜자가 서면으로 **최종조치 통지**를 발행하는 날 또는 90일이 경과한 시점 중 빠른 날 이후에 CRC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(상기 주소를 참조).

귀하가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수혜자가 90일이 경과하도록 **최종조치 통지**를 송부하지 않는 경우, 수혜자가 해당 통지를 발부하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CRC에 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 단 90일이 경과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(즉 수혜자에게 민원을 제기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)에 CRC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.

수혜자가 귀하의 민원에 대한 **최종조치 통지**를 귀하에게 발부했으나 귀하가 수혜자의 결정 또는 해결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 CRC에 민원을 제기하여 주십시오. 단 최종조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CRC에 민원을 제기해야 합니다.